

<의안번호 제1124호>

2021. 10. 20.(수)

제1차 교육위원회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124호>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 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10. 6. 경상남도교육감
- 회 부 일 자: 2021. 10. 6.

2. 제안 이유

가. 처분(5건)

- 폐)하북초등학교 진북분교장 매각
- 구)대곡중학교 매각
- 폐)수곡초등학교 원계분교장 매각
- 구)김해봉황초등학교 매각
- 폐)설천초등학교 덕신분교장 매각

3.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제30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27조
-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나.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 기준¹⁾

구 분	금 액	면 적(토지만 해당)	비 고
취 득	20억원 이상	1건당 6,000㎡ 이상	
처 분	10억원 이상	1건당 5,000㎡ 이상	

1)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1항

4. 검토 내용

▣ 처분

가. 폐)하북초등학교 진북분교장 매각

1) 위치: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대평리 196 등

위성사진



현장사진



2) 재산 현황

구분	소재지	지번 (용도)	지목 (구조)	물량 (㎡)	기준가격 (천원)	비고
토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대평리	196	학교 용지	8,565	1,492,023	공시 지가
〃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대평리	271-3	학교 용지	964	167,929	〃
〃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대평리	196-2	학교 용지	210	39,795	〃
건물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대평리	2층 교사	철근콘 크리트	889.9	136,155	시가 표준액
〃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대평리	창고	시멘트 블럭	43.7	1,966	〃
입목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대평리	196	향나무 외 6종	26주	1,340	대장 가격
계					1,839,208	

※ 가감정 평가금액: 2,561,016천원(토지 2,337,360천원, 건물 등 223,656천원)

3) 매각 사유

- ▷ 2021. 7. 8. 창원시에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을 통해 먹거리 인식 전환을 위한 지역주민과 학생들 대상 식생활 개선 교육장(교육시설) 활용 및 질 좋은 지역 농산물 학교급식 제공을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 등을 위해 매수신청서를 제출함.
- ▷ 폐)하북초등학교 진북분교장은 1995. 3. 1. 학생수 감소로 인하여 폐지된 학교로서, 통학구역 내 학령인구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재 개교 가능성이 없으며 지역주민들도 폐교 매각에 찬성하고 있어 창원시에 매각하고자 함.

4) 매각재원 사용 계획

▷ 창원지역 공유재산 취득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투자

5) 매각 방법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²⁾제1항에 근거하여 창원시에 수의계약으로 매각

6) 검토의견

▷ 폐)하북초등학교 진북분교장은 향후 재 개교 및 자체 활용 계획이 없고, 창원시에서 먹거리 인식 전환을 위한 지역주민과 학생들 대상 식생활 개선 교육장(교육시설) 활용과 아울러 질 좋은 지역 농산물 학교급식 제공을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 등을 위해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매수를 요청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도 매각에 찬성하고 있어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폐교재산의 용도 및 매각 방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효율적인 폐교재산 관리 측면에서 매각의 타당성은 있는 것으로 사료됨.

2) 제5조(대부 등에 관한 특례) ①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 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려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폐교재산의 용도와 사용 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8. 20.>

3. “**교육용시설**”이란 유아, 청소년, 학생 및 주민 등의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자연 학습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야영장 등의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나. 구)대곡중학교 매각

1) 위치: 진주시 대곡면 유곡리 8-1 등

위성사진



현장사진



2) 재산 현황

구분	소재지	지번 (용도)	지목 (구조)	물량 (㎡)	기준가격 (천원)	비고
토지	진주시 대곡면 유곡리	8-1	학교용지	3,501	458,981	공시지가
ㄱ	진주시 대곡면 광석리	330	학교용지	10,832	614,175	"
ㄱ	진주시 대곡면 광석리	339	학교용지	1,256	90,055	"
ㄱ	진주시 대곡면 광석리	340	학교용지	534	13,937	"
ㄱ	진주시 대곡면 유곡리	16-9	학교용지	1,156	177,446	"
건물	진주시 대곡면 유곡리	교사	철근콘크리트	2,487.4	418,543	시가표준액
ㄱ	진주시 대곡면 유곡리	숙직실	시멘트벽돌	27.27	4,588	"
ㄱ	진주시 대곡면 유곡리	창고	블럭	21.88	3,681	"
공작물	진주시 대곡면 유곡리	8-1	주차장 외 7종	10식	5,780	가감정액
입목죽	진주시 대곡면 유곡리	8-1	은행나무 외 15종	87주	14,147	"
계					1,801,333	

※ 가감정 평가금액: 2,112,464천원(토지 1,639,890천원, 건물 등 472,574천원)

3) 매각 사유

- ▷ 2021. 7. 30. 진주대곡농업협동조합에서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농산물 반가공/전처리시설과 대곡문화복지센터를 조성하고자 매수신청서를 제출함.
- ▷ 구)대곡중학교는 2020. 3. 1.자로 대곡중학교가 대곡면에서 충무공동으로 이전하면서 현재 미활용 상태로, 향후 대곡면의 학생 수 증가요인이 없고 재 개교 가능성이 없으며 지역주민들도 매각에 찬성하고 있어 진주대곡농업협동조합에 매각하고자 함.

4) 매각재원 사용 계획

▷ 진주지역 공유재산 취득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투자

5) 매각 방법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제1항3)에 근거하여 진주대곡농협협동조합에 수의계약으로 매각

6) 검토의견

▷ 구)대곡중학교는 향후 재 개교 및 자체 활용 계획이 없고, 진주대곡농업협동조합에서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의한 지역 농산물 가공·처리시설 등 영농시설과 대곡문화복지센터 조성을 위해 매수를 요청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도 매각에 찬성하고 있어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폐교재산의 용도 및 매각 방법은 적절⁴⁾한 것으로 보이며, 효율적인 폐교재산 관리 측면에서 매각의 타당성은 있는 것으로 사료됨.

3) 제5조(대부 등에 관한 특례) ①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려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폐교재산의 용도와 사용 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3. 해당 폐교가 있는 시·군·구에 소재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어촌계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8. 20.>

7. “소득증대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 또는 같은 조 제1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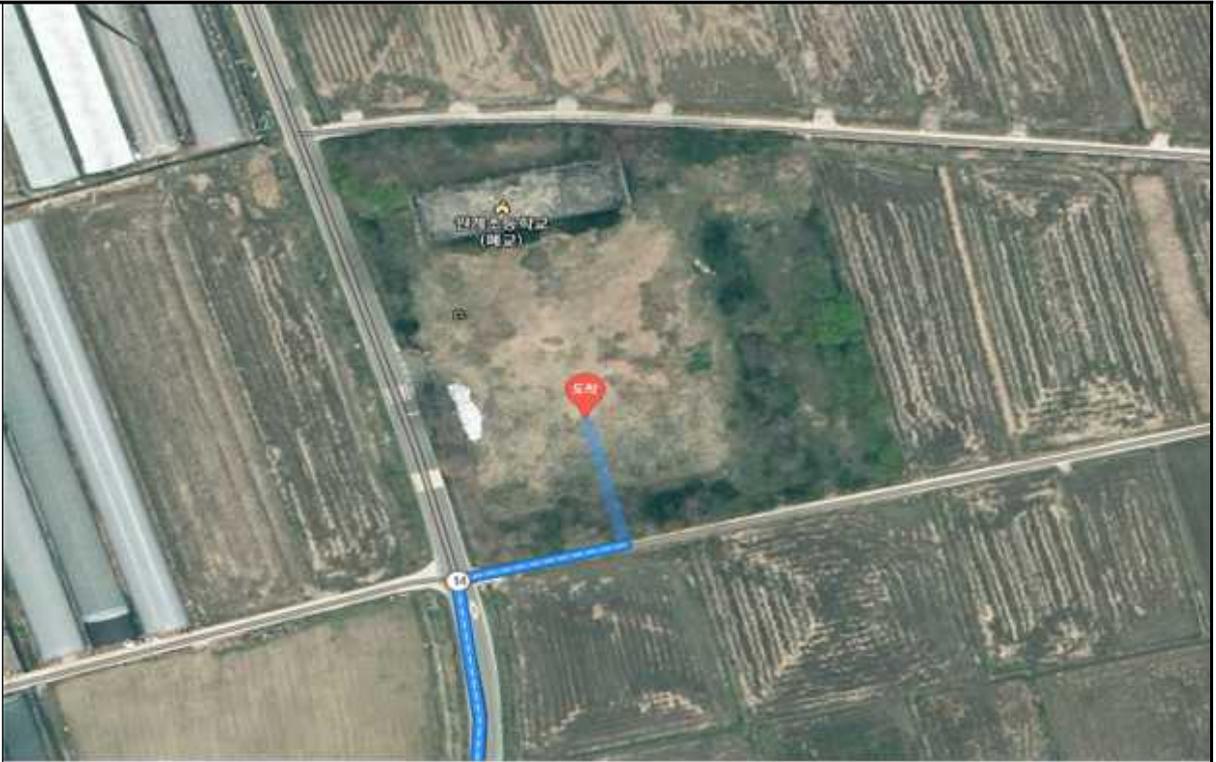
4) 해당 통학구역의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사실에 기초하여, 신설대체이전이 결정되어 이전하는 학교의 경우, 기존 학교는 그 실질적 형태와 내용이 “폐교”의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기존학교의 토지와 시설 등 공유재산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학교의 교육활동에 사용되던 시설과 그 밖의 재산에 해당함에 따라 “폐교재산”으로 볼 수 있을 것임

[교육부 질의 답변 회신]

다. 폐)수곡초등학교 원계분교장 매각

1) 위치: 진주시 수곡면 원계리 235-1

위성사진



현장사진



2) 재산 현황

구분	소재지	지번 (용도)	지목 (구조)	물량 (㎡)	기준가격 (천원)	비고
토지	진주시 수곡면 원계리	235-1	학교용지	7,355	219,914	공시지가
공작물	진주시 수곡면 원계리	235-1	웬스	1식	10,642	대장가액
입목죽	진주시 수곡면 원계리	235-1	느타나무외 2종	10주	5,075	가감정액
계					235,631	

※ 가감정 평가금액: 279,782천원(토지 268,457천원, 공작물 등 11,325천원)

3) 매각 사유

- ▷ 2021. 8. 31. 원계주민영농조합법인에서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딸기 수출 공선장 및 교육공간(어린이 캠핑장, 농촌체험공간, 이순신 장군 호국정신) 등을 조성하기 위해 매수신청서를 제출함.
- ▷ 폐)수곡초등학교 원계분교장은 1994. 3. 1. 학생수 감소로 폐지된 학교로서 2015년 까지 대부 활용하였으며, 현재는 미활용 상태로 향후 수곡면의 학생수 증가 요인 및 재 활용 계획이 없으며 지역 주민들도 매각에 찬성하고 있어, 원계주민영농조합법인에 매각 하고자 함.

4) 매각재원 사용 계획

- ▷ 진주지역 공유재산 취득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투자

5) 매각 방법

-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5)에 근거하여 원계주민영농조합법인에 수의계약으로 매각

6) 검토의견

- ▷ 폐)수곡초등학교 원계분교장은 향후 재 개교 및 자체 활용 계획이 없고, 원계주민영농조합법인에서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딸기 수출 공선장 설치와 아울러 어린이 캠핑장 등 교육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매수를 요청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도 매각에 찬성하고 있어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폐교재산의 용도 및 매각 방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효율적인 폐교재산 관리 측면에서 매각의 타당성은 있는 것으로 사료됨.

5) 제5조(대부 등에 관한 특례) ①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려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폐교재산의 용도와 사용 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2. 해당 폐교가 있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재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어업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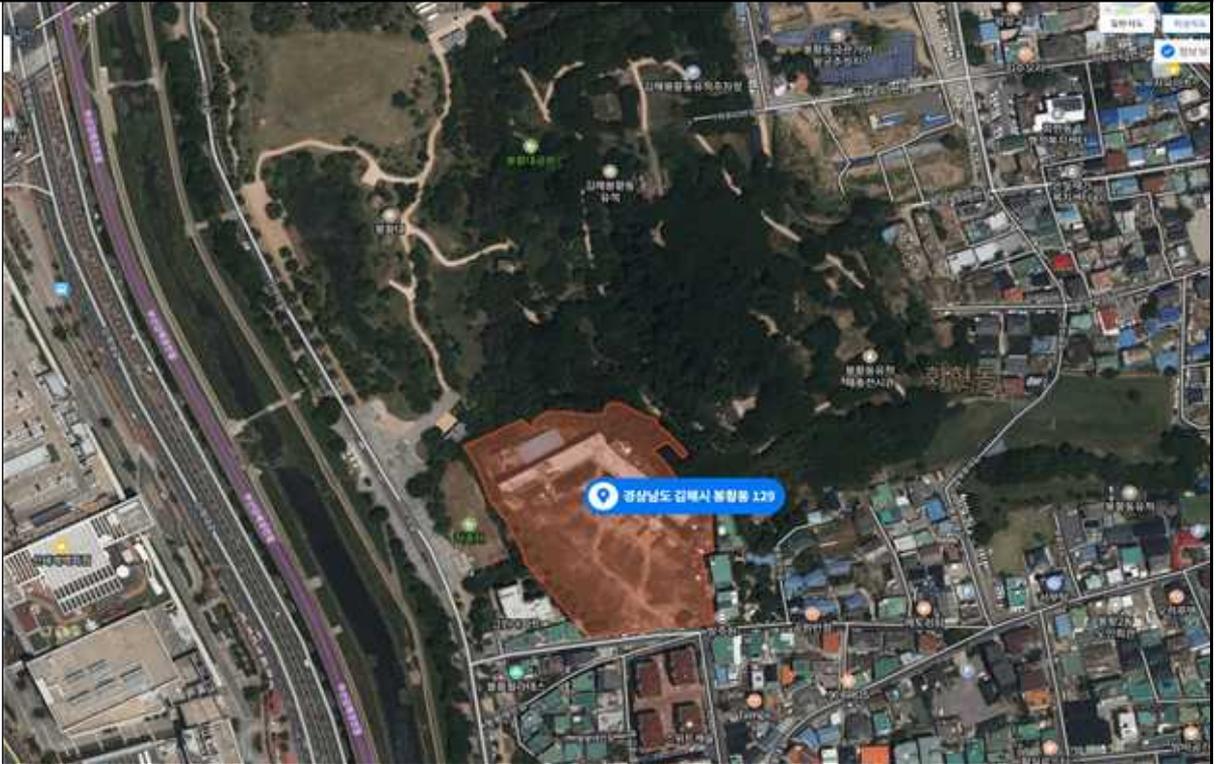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8. 20.>

7. “소득증대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 또는 같은 조 제1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라. 구)김해봉황초등학교 매각

1) 위치: 김해시 봉황동 129

위성사진



현장사진



2) 재산 현황

구분	소재지	지번 (용도)	지목 (구조)	물량 (㎡)	기준가격 (천원)	비고
토지	김해시 봉황동	129	학교용지	12,188	7,218,111	공시 지가
공작물	김해시 봉황동	129	교문 외 2종	3	1,051	대장 가격
계					7,219,162	

※ 가감정 평가금액: 8,532,651천원(토지 8,531,600천원, 공작물 1,051천원)

3) 매각 사유

- ▷ 구)김해봉황초등학교는 김해봉황초등학교가 2006. 3. 1.자로 봉황동에서 전하동으로 이전하면서 폐지된 학교로서, 김해교육지원청 청사이전 부지로 활용하려고 하였으나 매장문화재가 발굴되어 2021. 5. 11.자로 「김해 봉황동 유적」 사적 2호로 지정됨.
- ▷ 김해시에서 가야사유적 발굴체험관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수 신청서를 제출하여 건전한 재산관리와 지방교육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매각하고자 함.

4) 매각재원 사용 계획

- ▷ 김해지역 공유재산 취득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투자

5) 매각 방법

-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⁶⁾에 근거하여 김해시에 수의계약으로 매각

6) 검토의견

- ▷ 김해시에서 학생·주민들의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육용 시설인 가야유적 발굴체험 교육관 건립 등 지역 주민 복지 등을 위해 매수를 요청하고 있어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폐교재산의 용도 및 매각 방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⁷⁾, 효율적인 폐교재산 관리 측면에서 매각의 타당성은 있는 것으로 사료됨.

6) 제5조(대부 등에 관한 특례) ①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려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폐교재산의 용도와 사용 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8. 20.>

3. “**교육용시설**”이란 유아, 청소년, 학생 및 주민 등의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자연 학습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야영장 등의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해당 통학구역의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사실에 기초하여, 신설대체이전이 결정되어 이전하는 학교의 경우, 기존 학교는 그 실질적 형태와 내용이 “폐교”의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기존학교의 토지와 시설 등 공유재산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학교의 교육활동에 사용되던 시설과 그 밖의 재산에 해당함에 따라 “폐교재산”으로 볼 수 있을 것임

[교육부 질의 답변 회신]

마. 폐)설천초등학교 덕신분교장 매각

1) 위치: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274-5 등

위성사진



현장사진



2) 재산 현황

구분	소재지	지번 (용도)	지목 (구조)	물량 (㎡)	기준가격 (천원)	비고
토지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274-5	학교용지	278	9,757	
〃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278-2	대지	26	956	
〃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259-3	학교용지	10,204	358,160	
〃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266-1	전	168	2,184	
〃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259-4	학교용지	170	6,222	
〃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265-2	학교용지	205	7,503	
〃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271-4	전	171	2,223	
〃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270-4	전	151	1,963	
〃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270-5	전	38	494	
〃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274-3	도로	60	660	
건물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교사동	철근콘크리트	975.93	232,315	
〃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교사동	시멘트벽돌	82	5,166	
〃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강당	철골콘크리트	168	80,472	
〃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창고	시멘트벽돌	28.08	1,769	
〃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창고	시멘트벽돌	28.08	4,970	
공작물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259-3	급수시설외7종	8식	54,208	
계					769,022	

※ 가감정 평가금액: 1,174,714천원(토지 773,570천원, 건물 등 401,144천원)

3) 매각 사유

- ▷ 2021. 6. 17.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이 교육용 시설(야영장)로 활용하고자 매수신청서를 제출함.
- ▷ 폐)설천초등학교 덕신분교장은 2011. 3. 1. 폐지된 학교로서 현재는 미활용 상태로 학생수 증가 요인 및 재 활용 계획이 없으며 지역 주민들도 매각에 찬성하고 있어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에 매각하고자 함.

4) 매각재원 사용 계획

- ▷ 남해지역 공유재산 취득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투자

5) 매각 방법

-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⁸⁾에 근거하여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수의계약으로 매각

6) 검토의견

- ▷ 폐)설천초등학교 덕신분교장은 향후 재 개교 및 자체 활용 계획이 없고,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교육시설로써 주민 및 학생 등의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생태체험, 힐링캠프 등 탐방프로

8) 제5조(대부 등에 관한 특례) ①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려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폐교재산의 용도와 사용 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8. 20.>

3. “**교육용시설**”이란 유아, 청소년, 학생 및 주민 등의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자연 학습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야영장 등의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그램 운영 및 특산품 매장 운영을 통한 소득증대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매수를 요청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도 매각에 찬성하고 있는 등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폐교재산의 용도 및 매각 방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효율적인 폐교재산 관리 측면에서 매각의 타당성은 있는 것으로 사료됨.

5. 종합 검토 의견

가. 처분

1) 폐)하북초등학교 진북분교장, 구)대곡중학교 매각, 폐)수곡초등학교 원계분교장, 구)김해봉황초등학교 매각, 폐)설천초등학교 덕신분교장 매각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폐교 재산의 활용용도 및 매각 방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폐교 이후 재 개교 및 학교를 포함한 교육기관 설립 계획이 없고 교육용시설 및 소득증대 시설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수를 요청 하고 있고 지역주민들도 매각에 찬성하고 있어, 효율적인 폐교재산 관리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잔여 폐교재산에 대해서도 해당 지역 지자체 및 지역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활용 방안 마련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

회계명: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단위: 건, m², 천원)

구 분			기정계획(A) (2021년도 정기분 + 제1, 2, 3차 수시분)			관리계획안(B)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합 계 (C=A+B)		
			건수	물량	기준가격	건수	물량	기준가격	건수	물량	기준가격
취 득	합계	계	31	125,242.32	238,727,256				31	125,242.32	238,727,256
		토지	8	50,704.90	29,023,096				8	50,704.90	29,023,096
		건물	21	74,512.42	204,567,556				21	74,512.42	204,567,556
		기타	2	25	5,136,604				2	25	5,136,604
	1. 매입	계	29	110,146.84	228,747,280				29	110,146.84	228,747,280
		토지	7	37,542.90	24,409,096				7	37,542.90	24,409,096
		건물	20	72,578.94	199,201,580				20	72,578.94	199,201,580
		기타	2	25	5,136,604				2	25	5,136,604
	2. 교환	계									
		토지									
		건물									
	3. 기타	계	2	15,095.48	9,979,976				2	15,095.48	9,979,976
		토지	1	13,162.00	4,614,000				1	13,162.00	4,614,000
		건물	1	1,933.48	5,365,976				1	1,933.48	5,365,976
		기타									
	취 분	합계	계	140	270,678.86	19,800,642	37	62,929.24	11,864,356	177	333,608.10
토지			42	249,882.00	14,437,401	20	58,032.00	10,882,488	62	307,914.00	25,319,889
건물			76	19,933.86	4,665,339	10	4,752.24	889,625	86	24,686.10	5,554,964
기타			22	863	697,902	7	145.00	92,243	29	1,008.00	790,145
4. 매각		계	123	264,320.62	17,816,498	37	62,929.24	11,864,356	160	327,249.86	29,680,854
		토지	42	249,882.00	14,437,401	20	58,032.00	10,882,488	62	307,914.00	25,319,889
		건물	60	13,580.62	2,683,361	10	4,752.24	889,625	70	18,332.86	3,572,986
		기타	21	858	695,736	7	145.00	92,243	28	1,003.00	787,979
5. 교환		계									
		토지									
		건물									
6. 기타		계	17	6,358.24	1,984,144				17	6,358.24	1,984,144
		토지									
		건물	16	6,353.24	1,981,978				16	6,353.24	1,981,978
		기타	1	5	2,166				1	5	2,166

구 분		기정계획(A) (2021년도 정기분 + 제1, 2, 3차 수시분)			관리계획안(B)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합 계 (C=A+B)		
		건수	물량	기준가격	건수	물량	기준가격	건수	물량	기준가격
변 경	합계	계	4	87,704.00	81,734,715			4	87,704.00	81,734,715
		토지	2	59,308.00	6,487,035			2	59,308.00	6,487,035
		건물	2	28,396.00	75,247,680			2	28,396.00	75,247,680
		기타								
	7. 매입	계	4	87,704.00	81,734,715			4	87,704.00	81,734,715
		토지	2	59,308.00	6,487,035			2	59,308.00	6,487,035
		건물	2	28,396.00	75,247,680			2	28,396.00	75,247,680
		기타								
	8. 교환	계								
		토지								
		건물								
		기타								
	9. 기타	계								
		토지								
		건물								
		기타								

처 분 대 상 재 산 목 록

회계명: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단위: m², 식, 주,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산표시			처분금액	처분시기	처분사유	비고
		지목 (구조)	소재지	물량				
계	계			62,929.24	11,864,356			
	토지			58,032.00	10,882,488			
	건물			4,752.24	889,625			
	기타			145.00	92,243			
1	토지	학교용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대평리 196	8,565.00	1,492,023	2021년 (하반기)	창원시에서 창원형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매입 요청	폐)하북초 진북분교장 (토지)
2	토지	학교용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대평리 271-3	964.00	167,929	2021년 (하반기)	“	폐)하북초 진북분교장 (토지)
3	토지	학교용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대평리 196-2	210.00	39,795	2021년 (하반기)	“	폐)하북초 진북분교장 (토지)
4	건물	철근콘 크리트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대평리 196	889.90	136,155	2021년 (하반기)	“	폐)하북초 진북분교장 (교사)
5	건물	시멘트 블럭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대평리 196	43.70	1,966	2021년 (하반기)	“	폐)하북초 진북분교장 (창고)
6	입목죽	향나무 외 6종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대평리 196	26	1,340	2021년 (하반기)	“	폐)하북초 진북분교장 (입목죽)
7	토지	학교용지	진주시 대곡면 유곡리 8-1	3,501.00	458,981	2021년 (하반기)	진주대곡농업협동조합에서 지역농산물 반가공/전처리시설과 대곡문화센터로 조성을 위해 매입 요청	구)대곡중학교 (토지)

일련 번호	구분	재산표시			처분금액	처분시기	처분사유	비고
		지목 (구조)	소재지	물량				
8	토지	학교용지	진주시 대곡면 광석리 330	10,832.00	614,175	2021년 (하반기)	진주대곡농업협동조합에서 지역농산물 반가공/전처리시설과 대곡문화센터로 조성을 위해 매입 요청	구)대곡중학교 (토지)
9	토지	학교용지	진주시 대곡면 광석리 339	1,256.00	90,055	2021년 (하반기)	“	구)대곡중학교 (토지)
10	토지	학교용지	진주시 대곡면 광석리 340	534.00	13,937	2021년 (하반기)	“	구)대곡중학교 (토지)
11	토지	학교용지	진주시 대곡면 유곡리 16-9	1,156.00	177,446	2021년 (하반기)	“	구)대곡중학교 (토지)
12	건물	철근콘 크리트	진주시 대곡면 유곡리 8-1	2,487.40	418,543	2021년 (하반기)	“	구)대곡중학교 (교사)
13	건물	시멘트 벽돌	진주시 대곡면 유곡리 8-1	27.27	4,588	2021년 (하반기)	“	구)대곡중학교 (숙직실)
14	건물	블럭	진주시 대곡면 유곡리 8-1	21.88	3,681	2021년 (하반기)	“	구)대곡중학교 (창고)
15	공작물	주차장 외 7종	진주시 대곡면 유곡리 8-1	10	5,780	2021년 (하반기)	“	구)대곡중학교 (공작물)
16	입목죽	은행나무 외 15종	진주시 대곡면 유곡리 8-1	87	41,147	2021년 (하반기)	“	구)대곡중학교 (입목죽)
17	토지	학교용지	진주시 수곡면 원계리 235-1	7,355.00	219,914	2021년 (하반기)	원계주민영농조합법인에서 교육공간과 딸기 수출공선장을 조성하기 위해 매입 요청	폐)수곡초 원계분교장 (토지)
18	공작물	웬스	진주시 수곡면 원계리 235-1	1	10,642	2021년 (하반기)	“	폐)수곡초 원계분교장 (공작물)
19	입목죽	느티나무 외 2종	진주시 수곡면 원계리 235-1	10	5,075	2021년 (하반기)	“	폐)수곡초 원계분교장 (입목죽)

일련 번호	구분	재산표시			처분금액	처분시기	처분사유	비고
		지목 (구조)	소재지	물량				
20	토지	학교용지	김해시 봉황동 129	12,188	7,218,111	2021년 (하반기)	김해시에서 가야유적 발굴체험교육관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 요청	구)김해봉황초 (토지)
21	공작물	교문 외 2종	김해시 봉황동 129	3	1,051	2021년 (하반기)	“	구)김해봉황초 (공작물)
22	토지	학교용지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274-5	278.00	9,757	2021년 (하반기)	국립공원공단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교육용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 요청	폐)설천초 덕신분교장 (토지)
23	토지	대지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278-2	26.00	956	2021년 (하반기)	“	폐)설천초 덕신분교장 (토지)
24	토지	학교용지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259-3	10,204.00	358,160	2021년 (하반기)	“	폐)설천초 덕신분교장 (토지)
25	토지	전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266-1	168.00	2,184	2021년 (하반기)	“	폐)설천초 덕신분교장 (토지)
26	토지	학교용지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259-4	170.00	6,222	2021년 (하반기)	“	폐)설천초 덕신분교장 (토지)
27	토지	학교용지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265-2	205.00	7,503	2021년 (하반기)	“	폐)설천초 덕신분교장 (토지)
28	토지	전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271-4	171.00	2,223	2021년 (하반기)	“	폐)설천초 덕신분교장 (토지)
29	토지	전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270-4	151.00	1,963	2021년 (하반기)	“	폐)설천초 덕신분교장 (토지)
30	토지	전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270-5	38.00	494	2021년 (하반기)	“	폐)설천초 덕신분교장 (토지)
31	토지	도로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274-3	60.00	660	2021년 (하반기)	“	폐)설천초 덕신분교장 (토지)

일련 번호	구분	재산표시			처분금액	처분시기	처분사유	비고
		지목 (구조)	소재지	물량				
32	건물	철근콘 크리트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259-3	975.93	232,315	2021년 (하반기)	국립공원공단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교육용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 요청	폐)설천초 덕신분교장 (교사동)
33	건물	시멘트 벽돌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259-3	82.00	5,166	2021년 (하반기)	“	폐)설천초 덕신분교장 (교사동)
34	건물	철골콘 크리트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259-3	168.00	80,472	2021년 (하반기)	“	폐)설천초 덕신분교장 (강당)
35	건물	시멘트 벽돌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259-3	28.08	1,769	2021년 (하반기)	“	폐)설천초 덕신분교장 (창고)
36	건물	시멘트 벽돌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259-3	28.08	4,970	2021년 (하반기)	“	폐)설천초 덕신분교장 (창고)
37	공작물	급수시설 외 7종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259-3	8	54,208	2021년 (하반기)	“	폐)설천초 덕신분교장 (공작물)

관 련 법 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0조(처분재산의 가격 결정) 일반재산을 처분할 때 그 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⑥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처분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隣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건물
 -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건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의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감정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 동안만 적용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를 생략하고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 재산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교환할 수 있다.

④ 재산가격이 1천만원(특별시, 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3천만원)

미만으로 추정되는 재산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가격은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을 때에는 그 토지와 연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를 기준으로 할 수 있고, 건물의 가격은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산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가격평정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2.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확하게 그린 도면
3. 그 밖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매매 사례 등 관계 서류

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률에 따라 산정한 보상액을 해당 재산의 매각가격으로 할 수 있다.

⑦ 법 제12조에 따라 회계 간에 재산을 이관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유재산의 대장가격으로 정할 수 있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의 매매·교환을 신청한 자가 감정평가 실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측량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신청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교육감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은 그에 속하는 예산과 사업 예정에 따라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해 예산편성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교육장이 제출한 관리계획이 특히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외에는 그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대부 등에 관한 특례) ①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려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폐교재산의 용도와 사용 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
2. 해당 폐교가 있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재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어업법인
3. 해당 폐교가 있는 시·군·구에 소재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어촌계

② 제1항에 따라 폐교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그 대부요율, 대부기간 및 가격평정(價格評定) 등에 필요한 사항과 매각하는 경우 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하여 대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또는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2. 단체 또는 사인(私人)이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또는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어업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어촌계와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④ 시·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부한다.

1. 폐교재산을 전부 기부한 자(그 상속인과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폐교재산이 소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의 100분의 50 이상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⑤ 시·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1. 폐교재산이 5년 이상 활용되지 아니한 상태로 3회 이상 대부 또는 매각 공고를 하였으나 대부 또는 매수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폐교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해당 폐교가 있는 지역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어업법인

- 다. 해당 폐교가 있는 지역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어촌계
- 2. 해당 폐교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도 교육감과 사전에 협의하여 그 폐교재산을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